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10. 22.(금)
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10. 5. 성북구청장 (의안번호 제386호)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8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【2021. 10. 18.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건설교통국장 임승락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정리하여 주차장 운영·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규정 신설(안 제2조 별표1)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규정 신설(안 제2조 별표1)
-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친환경자동차의 범위 확대 (안 제2조 별표1)
- 상위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문구·조항 숫자 등 현행화(안 제2조 별표1, 제6조제2항, 제9조, 제22조의2)

- 그 밖의 띄어쓰기, 조문정리 및 문구수정(안 제1조의2제1항, 제2조 별표1, 제3조제1·2항, 제5조제1·3항, 제6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3조 제1항, 제15조제2항, 제16조제2항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제1항, 제21조의3제1항, 제22조의2·3, 제2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정진만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,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
 - 안 제2조 별표1 <비고> 22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100분의 20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 - 안 제2조 별표1 <비고> 23. 가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,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2시간 이내 등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.
 - 안 제2조 별표1 <비고> 18 :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중 “전기자동차”에 국한되었던 친환경자동차의 범위를 “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친환경자동차,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”로 확대 변경하였으며,
- 그 밖에 상위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문구 수정,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